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0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조은희 · 김용태 · 이성권
신성범 · 강명구 · 김재섭
이만희 · 박상웅 · 박정하
한동훈 의원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 예산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참여 확대, 성별에 따른 효과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학자금 및 주거 문제 등으로 사회진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등 청년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여야 함(안 제4조제8호 신설).
- 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6의3 신설).
- 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를 추가함(안 제44조의2제7호의2 신설).
- 마.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시 청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7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한다)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청년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청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청년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청년인지 예산서

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3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예산서의 첨부는 2028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는 2028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청년</u> <u>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u> <u>청년(이하 “청년”이라 한다)에</u> <u>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u> <u>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u> <u>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u> <u>한다.</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 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u><신 설></u>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 발 등)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청년인지 예산·결산 등 지</u> <u>방재정의 청년인지적 운용 및</u> <u>분석 방안</u> 9. (현행 제8호와 같음) <u>제36조의3(청년인지 예산서의 작</u> <u>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u> <u>장은 예산이 청년에게 미칠 영</u> <u>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u>

	<u>“청년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u>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u>청년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u> ③ 그 밖에 <u>청년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u><신설></u> 8. ~ 14. (생략) ② · ③ (생략)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청년인지 예산서</u> 8.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 9. (생략)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 ----- ----- ----- -----. 1.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 16. (생 략) ② ~ ⑧ (생 략)	<u>9의2. 제36조의3에 따른 청년인</u> <u>지 예산서 및 「지방회계법」</u> <u>제18조의2에 따른 청년인지</u> <u>결산서</u>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	--